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우계분야) II

-지난호에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

I. 사업개요

1. 목적

-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 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생산자 단체의 소비자 유통망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 및 축산 물 열처리 가공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및 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외식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생산자와 식품업체가 공동 출자한 식품기업 육성으로 상생실현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 건강·웰빙의 대표 이미지로 국내외 식품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유기적 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창업지원으로 농어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23조, 4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8조
- 축산법 제3조
- 전통주등의외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2014년까지 2,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농산물 수요증대 및 우수 농식품 공급 확대 도모

- 2014년까지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원업체 200개소 육성
-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소매유통 점유율을 2015년 까지 15%로 확대
- 축산물 열처리기공장 :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1,500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 육성
- 2015년까지 외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 공동조리 시설 15개소 육성
- 생산자 참여형 식품기업을 '15년까지 30개소 육성 목표'
- 2015년까지 친환경유기농식품 명품업체 100개소 육성하여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
- 2015년까지 우수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500개 개설

성과지표 목표치	2011 2008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인증 시기	총정방식
		2009	2010	▲▲		
·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수 (개소수)	-	21	32	(20)	12월	- 매년 농식품업체에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개소수
· 생산자단체의 소매유통 점유율(%)	10.5	9.1	9.5	10.0	액년 2월	- 전체 농산물 소매유통액 대비 농협의 소매유통 취급액 비율
· 열처리기공장 준공(개소)	-	-	2	2	액년 2월	- 열처리기공장 준공 개수
· 전통발효식품 전체 생산액(백만원)	451	413	425	438	액년 12월	- 전통발효식품업체 생산액 합계(통계청, 대한염업조합 발표)
· 공동조리시설 설치수	3	-	3	2	액년 1월	- 2011년 공동조리시설 설치 수-2010년 공동조리시설 설치수
· 응·복합 식품업체(개소수)	-	-	2	5	12월	- 신규로 설립하는 응복합 식품기업 지원개소수(누계)
· 우수 외식업체 기맹점 개설수	100	-	-	-	12월	- 2011년 기맹점 수-2010년 기맹점 수
· 식품업체당 평균 매출액(백만원)	5%	-	-	-	12월	- 총 정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4분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분기
합계	209,766	90,400	78,100	70,000	98,000
보조					
융자	209,766	90,400	78,100	70,000	98,000
○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 융자	164,400	35,000	19,500	19,500	26,500
○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 융자	-	11,000	8,000	6,400	6,400
○ 소비자 유통시설 확충					
- 융자	45,366	10,000	10,000	10,000	10,000

○ 축산물 열처리기공장	-	14,000	14,000	7,000	14,000
- 융자	-	9,200	13,400	6,000	8,000
○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				
- 융자	-	7,200	7,200	4,800	4,800
○ 외식업체 육성지원	-				
- 융자	-	4,000	6,000	4,000	6,000
○ 생산자참여형 식품기업 육성	-				
- 융자	-	-	-	3,500	3,500
○ 유기농식품명품화기반구축	-				
- 융자	-	-	-	4,000	14,000
○ 소규모 식품제조기공 청년지원	-				
- 융자	-	-	-	4,800	4,800

*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한 후 6월말까지 잔액이 발생한 사업 자금은 해당과와 협의하여 신청자가 많아 지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농수산물 유통공사)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전현영 사무관 정동기 사무관 이종태 사무관 박성기	02-500-1946 02-500-1953 02-500-1952 02-500-1943
	외식산업진흥팀	팀장 박순연 사무관 문지인	02-500-1961 02-500-1966
	유통정책과	과장 임정빈 사무관 김신재	02-500-1931 02-500-1935
	축산경영과	과장 노수현 사무관 이연섭	02-500-2058 02-500-2063
	친환경농업과	과장 김응본 사무관 정경석	02-500-2125 02-500-2129

농업자금 이자보전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원

I. 사업개요

1. 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영농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 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목표치	2011 최근 3개년 실적			사업선출 시기	총행방식
	2008	2009	2010		
· 적기지원율(%)	75%	67.2	72.3	74.7	매년말 (6월말까지 집행액/지원계획)×100

* 6월말까지 집행액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액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 농축산경영 자금용자	3,100,000	3,000,000	2,800,000	2,7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지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II.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농업 및 과수, 벼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및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자영업자〉
 - 자영업자(수산업 및 임업 포함).
 - 〈각서제출〉 :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별)
 - 재해대책자금 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

위 자료 대출실행

2. 지원자격·요건 및 한도

- ①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다면,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 경영비
- 지원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 기 지원된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가로써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 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 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 * 연간 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3. 대출방법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남태현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장 이신형 팀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I. 사업개요

1. 목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종합자금 신청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108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종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을 지표로 함

성과목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선출 사유	총점평점
		2008	2009	2010		
· 대출연체율(%)	0.90	0.69	0.65	0.95	매년말 (연체금액/대출잔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상
· 합계	1,100,000	1,800,000	1,500,000	1,500,000	
· 응재(농특자금)	165,000				
· 응자(농협자금)	935,000	1,800,000	1,500,000	1,500,0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 년도 예산증 농기계구입지원자금 1,000억원, 천적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기공육성 지원사업 100억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1,000억원 및 쌀가공산업육성자금 5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고부족시 내역 변경 후 집행

II.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어촌민박),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수출 및 규모화
- 시설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천적산업육성
- 개보수자금 : 농기계수리용장비지원
- 운영자금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농기계수리용부품확보, 꿀·녹용가공육성지원
- 농기계구입자금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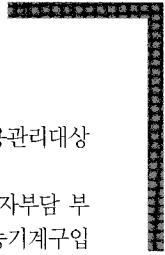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농촌가공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

* 농촌가공사업의 시설자금(추가시설 설치 포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행정기관은 사업승인 전 대출취급기관과 사전협의)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개인육종가 포함)

· 천적사업은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생산공급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는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아 유통저장시설을 설치한 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수출확대, 생산·가공 규모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업체(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은 대출 불가)
- 관광농원·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개발승인 및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축산관련 사업 중 「개」의 경우는 「진도개」사육농가에 한함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각서제출〉: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실적 1년 미만인 농업법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착수한 자(단, 운영자금은 지원 가능)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저장업자·관광농원사업자 및 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개인(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 제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3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 제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농기계구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종의 구분 없이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융자 가능(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거래가격의 80%이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3. 지원금의 지원조건 및 사용용도

〈시설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 농촌가공산업 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산업육성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농어촌민박

○ 지원용도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시설에 필요한 자금, 토지 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자금, 온실기능 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농기계보관창고 및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자금 등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및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시설자금 지원 제외. 단,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은 지원 가능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단, 농촌가공분야는 예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 #####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상(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백만원 미만의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3,305m²)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 · 도로 · 댐 · 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 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노지 992m²미만, 시설부지 331m²미만 지원 제외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촌가공사업,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천적산업육성,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면,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 보완 및 기계 ·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이내 상환(다면, 인삼식재 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이내 상환)
-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원 제외)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 · 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임식비는 제주도의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시에 한해 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 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4. 유의사항

-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 · 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 구입비축, 꿀 · 녹용기공육성지원사업의 세부 시행 행지침은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
 - *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은 1,000만원 미만 사업도 2011년부터 종합자금으로 통합 지원
 - *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농기계(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자금에 한하여 지원 (도정공장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
-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은 2011년부터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

〈축산〉

- 축산업등록제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기준 이하 농가도 등록 후 지원하되, 등록대상 축종이 아닌 경우는 예외)
- 생산시설과 관련된 집하장 · 수송차량 등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 천적산업 : 업체당 지원한도는 8억원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

〈수출 및 규모화〉

- 수출확대, 생산 · 가공 규모화를 위해 특작 · 축산 · 농촌가공사업 분야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대출금액 : 5억~42억원이내
- 대출 금리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 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 대출금액이 10억원 미만 3.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까지는 3.3%,

- 30억원 이상은 2.3% 적용
 -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추가 약정(MOU) 체결
 -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대출사무소 사전 고지
- 경영체 영업활동 관련 주거래 계좌는 대출취급기관 계좌 이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남태현 사무관 조정래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장 이신형 팀장 송재영	02-2080-6770 02-2080-6816

③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I.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보다 1.5%p가 높은 90.7%를 2011년도 목표치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8	2009	2010		
· 농업경영회생 자금 상환율(%)	90.7 %	83.6 %	90.0 %	94.0 %	연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연체 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 농업경영회 생자금(증자)	960,000	30,000	50,000	60,000	매년 60,000 수준

II.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임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

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 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 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 관련 연체채무: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 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청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 1. 8 이후 타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 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인수 회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 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

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재무구조의 전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 ① 경영회생자금: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응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② 인수자금: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등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1〉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

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지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2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	규모	비고
축산		
- 한우	25두 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소	25두 이상	- 척유마리수 기준
- 돼지	500두 이상	- 모든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 이상	
- 흑염소	250두 이상	
- 꽂사슴	65두 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 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 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 복합영농일 경우 농신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담태현 사무관 충근형	02-500-1741 02-500-174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장 이신형 팀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가축재해보험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가입률을 60%까지 제고

성과지표 목표치	2011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종류 기준	측정방법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100
	2008	2009	2010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52.6	45.9	47.8	50.2	매년말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1	1	1	1	매년말 매년도 가축보험 대상축종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계	259,704	55,670	61,816	66,196	
보조	127,145	27,835	30,908	33,098	
자부담	132,559	27,835	30,908	33,098	

II.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관

- 농협중앙회 및 민영보험사

2. 지원대상 및 요건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 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

3. 지원내용

- 농업인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

4. 지원형태

- 보험료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50% 보조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가금, 축사)

구분	가금	축사
가입대상	닭, 오리, 꿩, 매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광상조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보험료의 50%	

- 가금·축사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입대상
가금	•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 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 제한 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기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 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 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보상	

* 농협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III.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 사업시행자는 2012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1. 4월말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 6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 방법 등

문제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남태현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I.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

-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비중을 2012년까지 전체 주요축산물 생산량의 10%로 확대

성과지표 목표치	2011. 2007.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선출 시기	측정방식
		2008.	2009.	2010.		
·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률(%)	9.0	0.4	3.6	7.3	3월말	①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상
합계	-	1,000	3,000	3,000	86,000
보조	-	1,000		3,000	86,000
융자					
지방비					
자부담					

II.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 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3. 지원대상

-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인증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년간만 지급
-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보조, 국고 100%
- 지급대상 기간 : 2010. 11. 1~2011. 10. 31
 - 동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에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인증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란계는 출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산출서식 : 인증 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 2011. 11. 1~2012. 10. 31까지는 2012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l 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 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년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연간 지급액은 신청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방법

- 2010. 11. 1~2011. 4. 30 실적 : 6월에 지급
- 2011. 5. 1~2011. 10. 31 실적 : 12월에 지급
* 다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 직불금은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유효기간에 만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인증 취소, 표시정지, HACCP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기간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하반기 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여예산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비율(%) : $(예산액/신청액) \times 100$

※ 사업예산 과부족액 발생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 사업대상자의 선정순위에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일자가 빠른 농가
- ②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 ③ “제1항~제2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신현관 사무관 한철수	02-500-2041 02-500-204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장 안영수 서기관 장맹수	031-445-9366 031-445-1572

기축분뇨처리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20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2007년 83%에서 2012년 90%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20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達成 시기	측정방식
		2008	2009	2010		
· 가축분뇨자원화율(% 주지도)	87.5	84.3	85.6	-	2011.2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 가축분뇨해양 배출량(천톤, 부지표)	200	1,460	1,171	-	2011.1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해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96,010	118,256	130,410	127,890	127,890
보조	31,289	50,807	53,142	50,524	50,524
융자	35,097	24,602	25,950	27,600	27,600
지방비	26,184	38,645	42,812	41,646	41,646
자부담	3,340	4,202	8,505	8,120	8,1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협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 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 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 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 사지원
 -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업체(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단, 중

규모(30톤 내외)의 분산형 공동자원화시설도 설치 가능하나 동일 시·군내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1개 법인으로 통일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 (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 농경지 등을 200ha 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고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를 부착하도록 지도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 및 부숙판정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공동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2011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시급성을 감안,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6개월 적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2011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 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풀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륨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농가 지원제외 시설·장비 : 바륨카, 암롤

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려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륨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풀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 및 부숙도판정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부숙판정서 발급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속도판정기 : 액비부속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지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 거치)
공동자원화시설					7년(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 퇴·액비화	50	30	20	-	
- 에너지화	30	30	20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시설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작관리평가	10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m²)

축종	폐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저
단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청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첫소 운동장의 비기설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래·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 단위 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비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는 보다 실제 공시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⑥ 현생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증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 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닭 케이저의 단기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 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 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폐지	한우	젖소	닭	평사
개별시설	500	200	2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70% 이상 처리)
- 퇴비화시설	4,5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퇴비화 70% 이상 처리)
- 에너지화시설	7,000 (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톤당 7천만원 이내 적용)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 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속도판정기	3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자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률(퇴·액비화 70톤 이상, 에너지화 5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상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

- 단, 액비저장조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액비화시설의 경우 능경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 내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설비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1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1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⑤ 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면,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분뇨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신현관 사무관 하옥원	02-500-2041 02-500-2055

- 다음호에 계속...